

가 소방직만으로는 대처·예방에 한계가 있어, 도시방재 전문가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우선적 확보와 진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긴요한 과제인바,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지난번 국지성 호우로 발생한 수재시 효율적 대처가 어려웠음을 지적하고자 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1명,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)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42
----------	-----

2001년 9월 일
재정경제위원회

- 1. 심사경과
 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8월 29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 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30일 회부
 - 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(2001년 9월 4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식)

가. 제안이유
현행 박물관의 명칭을 설립주체 위주로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, 박물관의 성격, 전시내용, 설립 및 운영주체 등을 함축하고 내·외국인들이 친근감을 갖고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설립주체 위주로 되어 있는 「서울특별시립 박물관」의 명칭을 「서울역사박물관」으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71조)

다. 참고사항
가) 관계법령
《지방자치법 제105조(사업소)》
①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《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(과·담당관 등의 설치)》

- ①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의 실장·국장·부장·과장·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(전문위원 : 김남중)
 - 서울시가 설치하는 대부분의 기관명에서 '시립'이라는 설립주체 중심의 명칭을 이용 시민·내용중심의 명칭으로 변경되고 있어, '서울특별시립박물관'의 기관명을 '서울역사박물관'으로 개칭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이용시민 중심의 명칭 개정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【 세부사항 】
○ 우리 시가 설립 중인 동 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일반시민이나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는 국내 최초로 도시역사박물관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, ○ 역사학계, 관계 전문가 등의 명칭변경은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을 고려해 볼때,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1명,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)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"15,340명"을 "15,446명"으로 하고, 같은조제2호중 "4,874명"을 "4,980명"으로 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<p>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장 제11절의 제목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 한다.</p> <p>제71조 제1항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사업소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</p> <p>①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의 소관사무는 서울역사박물관장이 승계한다.</p> <p>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소속 공무원은 서울역사박물관소속공무원으로 본다.</p> <p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명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”로 하고, 동조 제1조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,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”로 한다.</p> <p>②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명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”로 하고, 동조 제1조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 하며, 제4조제1항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”로 하고, 제8조제2항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장”으로 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7조 중 “면제하거나”를 “면제하고”로 하고, 동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3.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기념관을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경우(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</p>	<p>자인 시설에 한한다)</p> <p>제2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⑦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.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4.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<p>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최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③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, 동조 제5항 본문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동항 단서중 “제3항 및 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며, 동조제6항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동조제7항중 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를 “다음중 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의 50%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주고,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로 하며, 동조동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 2.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」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작은 구경의 인입급수관으로 수도물을 공급받는 주택 3. 공동급수장치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급
--	--